

미국판례

기자가 상호 신뢰할 만한 다양한 출처와 자료에 근거하였고
발행전에 정보내용이 정되었다면 사실상 악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Marcus N. Bressler v. Fortune Magazine
20 Med. L. Rptr. 1873(제 6 연방항소법원, 1992)

사건개요

1. Fortune 지는, 1986 년 10 월 27 일 기사 작성자 Brian Dumaine 으로 표시하고 「Nuclear Scandal 이 TVA(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를 뒤흔든다」는 제목하에, TVA 의 원자로 운전소장이 이익 충돌과 보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그 기사의 약 3 분의 1 은 TVA 의 Watts Bar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 은폐와 관련되었고 이 부분이 문제되었다.

2. 문제가 되는 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TVA 는 Hartford Steam Boiler 사와 Watts Bar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안전검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Hartford 사는 검사관 Hasten 으로 하여금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Hasten 은 검사과정에서 원자로 격납용기구역으로 물을 보내고 받아들이는 파이프의 용접부분이 공사규정에 따라 검사가 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파이프가 폭발하면 엄청난 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파이프는 이미 절연 조치되어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용이 소요되었다. TVA 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그 파이프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안전보고서를 작성하려 하였고, Hasten 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하에 TVA 의 공사규정과 기준을 관장하는 부서의 간부들(원고 Marcus Bressler 는 이 부서에 속해 있다)은 Hartford 사의 Hasten 상급자들에게 전화로 Hasten 의 비 협조적인 태도에 대하여 불평을 하였고, Hasten 은 상급자인 Harold Robison 의 압력 때문에 서명을 하였으나 Robison 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서명에 부기하였다. TVA 소속 검사관 Gerry Smith 는 Hartford 사 소속의 검사인들에 대한 압력에 관하여 익명의 전화제보를 받았고, TVA 도 Hartford 사를 설득하여 검사관들의 보수를 인상하게 하지 않으면 응접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하겠다는 익명의 협박편지를 받았다. Marcus Bressler 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Hartford 사에 그 회사 소속의 검사관들도 이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이에 불응하면 TVA 는 검사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다. Mansour Guity 는 TVA 이사회 의 지시로 위 익명의 공갈편지에 관하여 조사를 한 결과 Bressler 가 안전위반을 은폐하기 위하여 Hartford 사에 압력을 가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핵 규제위원회 조사국에서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서 확인되었다.

3. 원고 Bressler 는 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Fortune 지를 상대로 Tennessee 주 동부지역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배심원들은 Bressler 에

대한 기사는 허위이며 사실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고, 1심 법원은 Fortune 지가 원고에게 25만 달러의 전보손해와 3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fortune 지는 1) 원고는 공공적 인물(public figure)이므로 기사내용이 허위이고 사실상 악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2) 1심은 배심원에게 원고는 명확하고도 확신을 하기에 족한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증거의 우월만으로 허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판결요지(다수의견)

Guy 판사, Norris 판사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Bressler는 공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fortune 지가 사실상 악의로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기사의 요지(gist)는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공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서 사실상 악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proof)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3. 기사 중 다툼이 있는 부분의 요지는, 원고가 Watts Bar 원자력발전소내의 안전에 관련되는 응접부분이 기술규정에 위배되는데도 이에 부합한다고 증명하도록 검사관(inspector)에게 압력을 행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또한 안전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4. Fortune 지는 상호 신뢰할 만한 다양한 출처와 자료에 근거하였고 발행전에 정보내용을 정사하였으므로 문제의 기사에 대하여 사실상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이유 (요약)

I 판단의 기준

Bressler는 공공적 인물이므로 Fortune 지가 사실상 악의로 기사를 게재하였고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5 U.S. 254 (1954)), 기사의 요지가 허위라는 사실(Masson v. New Yorker Magazine, Inc., 111 S. Ct. 2419(1991))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실상 악의는 최소한 경솔하게 진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 인정된다 즉 항소인(피고)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고도의 인식(high degree of awareness of...probable falsity)하에」 허위 기사를 게재하였을 때 사실상 악의는 인정된다. 이는 출판물의 진실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serious doubts)을 하였는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주관적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악의는 사실상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증거의 신뢰성결정(credibility determinations)은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만 항소심이 이를 달리 할 수 있지만, 항소심은 독자적으로 기록전체를 검토하고 문제의 기사내용과 배경도 검토하여야 한다(Harte-Hanks Communications, Inc. v. Connaughton, 491 U.S. 657, (1989))

II. 기록상 사실상 악의 유무 판단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TVA 의 가동되고 있지 않는 원자력의 원자로와 TVA 의 원자력운전소장이

연방이익충돌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Fortune 지, 기자인 Brian Dumaine 과 Brett Fromson 은 미 확인조건보고서 (Nonconforming Condition Report) 5609 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TVA 와 Watts Bar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검사계약을 체결한 Hartford 사에서 파견된 검사관 Howard Hasten 은 유압시험중 발전소의 관통 부위내에 있는 파이프의 용접부분에 대린 누출여부가 눈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확인은 미국기계공학회가 발표한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고 그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Hasten 의 임무였다. Hasten 이 이 문제에 관한 미확인조건보고서를 준비하자 TVA 에서 미국기계공학회 규정에 관한 전문가인 원고 Bressler 는 Haston 의 상급자인 Harold Roblson 및 William Higginbotham 차 상의하였다. 미확인 조건보고서 문제로 TVA 의 기사인 Dorwin Etzler 는 Bressler 와 상의를 한 다음 용접부분은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승인되기 위하여는 검사관 Hasten 의 서명이 요구되었고, 만약 그가 서명하지 않으면 TVA 는 핵규제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그렇게 되면 발전소의 가동이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어 있었다. Hasten 은 처음 서명을 거절하였으나 상급자의 압력에 못 이겨 서명은 하였지만 이는 Roblson 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서명에 부기 하였다.

2. 몇 달이 지나 TVA 가 핵규제위원회에 Watts Bar 원자력발전소가 운전면허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인통보를 하였을 때 통상과 에너지에 관한 하원위원회 소위원회는 John William Nelson 으로 하여금 TVA 와 Hartford 사가 현지의 검사관을 위협하여 안전하지 아니한 시설을 안전하다고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 직후 TVA 의 핵안전조사부원인 Jerry Smith 는 TVA 이사회에 핵검사관이 매수되었거나 TVA 의 압력 때문에 그들의 고용주에 의하여 양보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불평하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고, TVA 이사회는 Quality Technology 사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후 Hartford 사의 검사관들 보수가 인상되지 않으면 미국기계공학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핵규제위원회에 알리겠다는 익명의 공갈편지가 배달되어 TVA 이사회는 TVA 의 핵안전조사부원인 Mansour Guity 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는 TVA 와 Hartford 사 경영자들은 공모하여 검사관들로 하여금 규정에 따라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을 용인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Guity 는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신의 위와 같은 조사내용 때문에 상관들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 사임 하였다. 그러나 Guity 는 TVA 를 상대로 보복소송(retaliation claim)을 제기하였고 핵안전조사부원인 Jerry Smith 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다. 한편 핵규제위원회는 공모와 검사관에 대한 협박주장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상과 에너지에 관한 하원위원회 소위원회에 통보하였다.

3. Fortune 지의 기자인 Fromson 은 위 소위원회의 법률고문인 Henry Myers 를 회견한 결과핵규제위원회는 핵안전조사부원이 발견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 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Fromson 의 Myers 에 대한 회견록에는 Myers 가 핵규제위원회는 TVA 가 미국기계공학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Bressler 는 Hartford 사의

Higginbotham에게 압력을 가하였으며, Higg는 Robison으로 하여금 Hasten에게 방책을 가하도록 하였고 Robison은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핵규제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동안 Fortune지의 기자인 Brian Dumaine은 Quality Technology사의 전임조사자인 Owen Thero를 회견하였다. Thero는 Dumaine에게 Bressler가 Hartford사의 경영진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Hartford사와 더 이상 검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umaine은 Guity와 Smith를 회견하였고, 그의 회견록에는 Guity가 TVA 경영진과 Hartford사의 경영자들은 Hartfoyd사의 다른 경영자들에게 검사관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파이프문제에 관한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Fromson도 Gulfy를 여러번 회견하였다. Froinson의 회견록에는 Guity가 TVA는 Hartford사의 본사에 압력을 가하였고, Hartford사의 지역경영자들과 TVA 경영자들은 핵검사관으로 하여금 역학적으로 시험되지 않은 관통용접을 승인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명백히 공모하였으며, TVA 직원들은 그의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자들은 또한 Guity와 Smith의 TVA에 대한 위 보복소송기록의 일부인 증언 녹취서 사본을 조사하였다. 증언 녹취서에서 TVA의 법률고문인 Mason은 Hartford사와의 검사계약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할 만큼 부적절하게 TVA가 관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강한 의심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Mason은 Guity가 핵 안전조사부원의 책임자인 Michael Kidd에게 Bressler는 Hartford사로 하여금 TVA의 미국기계공학회 규정문제에 관한 입장을 정하도록 전국적인 여러 규정위원회 위원인 그의 지위를 이용하였고, Bressler는 핵발전소 현장에서 발생한 규정준수문제로 Hartford사의 지역사무소와 접촉하였으며, 지역사무소는 현장과 접촉하여 규정준수문제를 설명했거나 해결책을 명하였을 것이라고도 증언하였다. Fromson은 Quality Technology사의 조사자인 William Kemp를 회견하였고, 그도 Bressler가 규정문제에 관하여 Hartford사에 압력을 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Kemp는 Fromson에게 검사관 Hasten이 미확인보고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Bressler는 Higginbotham에게 전화를 하였고, Higg는 다시 Hasten의 상관인 Robison에게 전화하여 Hasten의 비협조적인 행동에 대하여 불평을 하였고, 이에 Robison이 Hasten으로 하여금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romson이 Hasten을 면담했을 때, 그는 Robison이 강요했기 때문에 서명하였고, Hign은 Bressler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Bressler가 계약을 종료시키겠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Hartford사는 계약종료를 항상 우려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romson은 Hasten의 상관들 및 Bressler를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 하였다. Dumaine과 Fromson이 기사의 초안을 완성하였을 때 fortune지의 편집인들은 잡지발행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사의 내용이 정보의 출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확인 과정을 거쳤고, 정보출처인 Guity, Myers, Kemp, thoro 및 Smith에 의하면 기사내용이 정확하였다.

4. 다양한 취재원, 그들의 확실한 진술과 명백한 신뢰성 그리고 취재정보에 대한 발행전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항소인(피고)에게 잡지에 실린 기사의 진실성에 대하여 사실상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III. 결론

그러므로 더 나아가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항소인(원고) 승고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소인(피고)을 위한 판결등록(entry of judgement)을 위하여 환송한다.

소수의견

Batchelder 판사의 소수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은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내용이 본질적으로 진실인가 허위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오로지 Fortune 지가 사실상 악의를 갖고 기사를 게재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도 잡지에 실린 기사내용을 그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 기사의 요지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그 선례로 Masson 사건을 들고 있지만 그 사건에서도 연방대법원은 기사의 진위 또는 사실상 악의 유무를 분석하기 전에 내용을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2. 문제의 기사에는 ① 검사관들은 TVA 와 그 들의 상관에 의하여 안전에 관한 보고서를 승인 하도록 강제당하였다, ② TVA 는 증기와 물이 통하는 중요한 파이프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 ③ 파이프가 폭발하면 엄청난 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④ Bressler 는 Hartford 사에 그들의 검사관들로 하여금 순응하게 하지 않으면 검사계약을 경신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다는 등 실제 다수의견이 요약한 사건의 요지와 다른 부분이 많다. 1심 배심원들은 이러한 내용이 허위이고 Fortune 지에 사실상 악의가 있다고 평결하였으며 이러한 평결에 명백한 잘못이 없으므로 항소법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도 다수의견은 이를 존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명예훼손사건에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주의 이익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정헌법 제 1 조의 이익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에서는 증거의 우월만으로 허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다수의견이 명확하고도 확신을 하기에 족한 증거에 의하여서만 허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잘못이다.